공고 제2026 - 002호

2026년도 제37회 감정평가사 국가자격시험 시행계획 공고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2026년도 제37회 감정평가사 국가자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월 2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2026년도 주요 강조사항

○ **영어시험 성적 인정 관련**(제출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8쪽 **8. 공인어학성적** 참조)

-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제4항 개정**(2024. 8. 20. 시행)**으로 영어과목을 대체하는 영어시험의 인정기간이 **기존 2년에서 5년으로 연장**
- 관련 법령(부칙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22년 8월 20일 이후에 실시된 시험에서 제1차 시험일 전날(2026. 4. 3.)까지 발표되는 성적으**로서,
- 영어시험의 시행기관에서 정한 **성적의 자체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사전등록하여 진위가 확인이 된 성적에 한해 인정**

※ 2022년 8월 20일 전에 실시된 성적은 개정 시행령 시행일 전 유효기간 만료로 연장 규정이 미적용됨에 따라 인정 불가

※ (참고) 영어능력검정시험 실시 기간에 따라 인정되는 해당 감정평가사 시험

영어시험 실시 기간	인정되는 시험	영어시험 실시 기간	인정되는 시험
2022. 8. 20. ~ 2022. 12. 31.	2027년도 제1차 시험까지	2024. 1. 1. ~ 2024. 12. 31.	2029년도 제1차 시험까지
2023. 1. 1. ~ 2023. 12. 31.	2028년도 제1차 시험까지	2025. 1. 1. ~ 2025. 12. 31.	2030년도 제1차 시험까지

○ **응시편의 제공 증빙서류 추가 인정**

- 시험시간 연장 신청을 위한 진단서 기준을 완화하여, 「의료법」 제3조에 의한 종합병원(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에서 발급한 진단서 외 **병원급 의료기관(병원,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에서 발급한 진단서도 인정**
- 임신부 증빙서류로 의사소견서, 임신(사실)확인서 외 **담당 의사의 확인이 포함된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신청서' 추가 인정**

○ **신분증 인정범위 확대**

- 모바일 신분증 발급기관 확대 및 종류 다양화에 따라 모바일 신분증 인정범위 확대(신분증 인정 범위는 18쪽 **12. 수험자 유의사항** 및 큐넷 공지사항 참조)

○ **합격자 발표 방법 변경**

- 자동안내전화(ARS, 유료) 발표 폐지에 따라 큐넷 감정평가사 홈페이지 및 관보(제2차 시험)를 통해 확인

1. 최소합격인원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 2026년도 제37회 감정평가사 제2차 시험 최소합격인원: 180명

2. 시험일정 및 시행지역

구 분	원서접수기간	시험장소	시행지역	시험일자	합격자발표
제1차 시 험	2026. 2. 2.(월) 09:00 ~ 2. 6.(금) 18:00	원서접수 시 수험자 직접선택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2026. 4. 4.(토)**	2026. 5. 6.(수)
제2차 시 험	2026. 5. 18.(월) 09:00 ~ 5. 22.(금) 18:00		서울, 부산	**2026. 7. 4.(토)**	2026. 10. 21.(수)

제1차 시험 면제서류 제출기간	**2026. 5. 13.(수) 09:00 ~ 5. 22.(금) 17:00** **※ 토·일요일, 공휴일 제외 / 방문 또는 우편 제출**

※ 원서 접수기간 중에는 24시간 접수 가능[단, 원서접수 시작일은 09:00부터, 원서접수 마감일은 18:00까지 접수 가능]하며, 접수기간 종료 후에는 응시원서 접수 불가(추가접수 없음)

※ 가상계좌는 접수완료 시점이 13시 이전은 당일 14시까지 입금완료, 13시 이후는 익일 14시까지 입금 완료하여야 함(지정 시간까지 미입금 시, 원서접수가 취소됨)

3. 시험과목 및 시험시간

가. 시험과목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구 분	시 험 과 목	시험방법
제 1 차 시 험	1 「**민법**」 중 **총칙, 물권**에 관한 규정 2 **경제학원론** 3 **부동산학원론** 4 **감정평가 관계 법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건축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중 지적에 관한 규정, 「국유재산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부동산등기법」,「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및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5 **회계학** 6 **영어(영어시험성적 제출로 대체)**	객 관 식 5지 택일형
제 2 차 시 험	1 **감정평가실무** 2 **감정평가이론** 3 **감정평가 및 보상 법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주 관 식 논 술 형 (기입형 병행가능)

- 시험과 관련하여 법률·회계처리기준 등을 적용하여 정답을 구하여야 하는 문제는 **시험시행일 현재 시행 중인 법률·회계처리기준 등을 적용**하여 그 정답을 구하여야 함
- 회계학 과목의 경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만 적용하여 출제**
- 기활용된 문제, 기출문제 등도 변형·활용되어 출제될 수 있음

나. 과목별 시험시간

시험구분	교 시	시 험 과 목	입 실 완 료	시 험 시 간	시험방법
제 1 차 시 험	1교시	① 민법(총칙, 물권) ② 경제학원론 ③ 부동산학원론	**09:00**	09:30 ~ 11:30(120분)	과목별 40문항 (객관식 5지 택일형)
	2교시	④ 감정평가 관계 법규 ⑤ 회계학	**11:50**	12:00 ~ 13:20(80분)	
제 2 차 시 험	1교시	감정평가실무	**09:00**	09:30 ~ 11:10(100분)	과목별 4문항 (주관식)
	중식시간 11:10 ~ 12:10 (60분)				
	2교시	감정평가이론	**12:10**	12:30 ~ 14:10(100분)	
	휴식시간 14:10 ~ 14:30 (20분)				
	3교시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14:30**	14:40 ~ 16:20(100분)	

※ 장애인 등 응시 편의 제공으로 시험시간 연장 시 수험인원과 효율적인 시험 집행을 고려하여 시행기관에서 휴식 및 중식 시간을 조정할 수 있음

다. 출제영역

○ 큐넷 감정평가사 홈페이지(www.Q-Net.or.kr/site/value) 자료실 게재

4. 응시자격 및 결격사유

가. 응시자격: 제한없음

※ 단, 최종 합격자 발표일(2026. 10. 21.) 기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같은 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응시하여 최종 합격한 사람에 대해서는 합격결정을 취소함)

나. 결격사유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12조)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감정평가사가 될 수 없다.**

1.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2.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제13조에 따라 감정평가사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단, 제39조제1항제11호 및 제12호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

6. 제39조제1항제11호 및 제12호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합격자 결정

가. 합격자 결정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 제1차 시험

- 영어 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시험과목에서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모든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사람

○ 제2차 시험

-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모든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사람
- 최소합격인원에 미달하는 경우 최소합격인원의 범위에서 모든 과목 40점 이상을 득점한 사람 중에서 전 과목 평균점수가 높은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

※ 동점자로 인하여 최소합격인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동점자 모두를 합격자로 결정. 이 경우 동점자의 점수는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까지만 계산하며, 반올림은 하지 아니함

6. 제1차 시험 면제

가. 2025년도 제36회 감정평가사 제1차 시험 합격자

< 전년도 제1차 시험 합격자의 원서접수 >

■ **'제1차 시험 합격자' 응시유형으로 제2차 시험 접수**
-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 제2차 시험 원서접수 기간에 인터넷 원서접수

■ **'제1차 시험 재응시자' 응시유형으로 제1차 시험 접수 및 제1차 시험 재응시**
- 제1차 시험 원서접수 시 "재응시자"로 선택하여 접수
- 제1차 시험에 재응시하여 불합격(결시 포함)하여도 금회 제2차 시험에 응시 가능하며, 금회 제2차 시험에 합격하면 합격자 처리
- 재응시자로 접수하는 경우, 유효한 영어성적 등록은 필수
(전년도에 인정된 영어성적표가 올해의 인정기준에 충족되지 않을 경우, 유효한 영어성적을 다시 등록)

나.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에서 정한 다음 기관에서 2026. 3. 1. 기준 5년 이상 감정평가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한 사람(해당자는 제2차 시험 접수기간에 접수)

※ 제출 서류에 다음 법정기관, 면제대상 기관, 면제대상 업무가 모두 명확히 명시된 경력에 한하여 인정 가능

(예 1) 국세청 재산세과에서 실제 기준시가 조사·결정 업무를 수행하였으나 경력증명서, 업무분장표 등 제출한 서류상 확인 불가한 경우, 인정 불가

(예 2) 민간 경력 중 "감정평가 보조업무" 기재시 수행업무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없으므로 인정 불가("감정평가에 관한 현장조사, 연구" 등 구체적으로 기재)

법정기관	면제대상 업무	면제대상 기관
1. 감정평가법인 2. 감정평가사사무소 3. 한국감정평가사협회	• 감정평가에 관한 현장 조사, 연구 등 보조업무 **※ 단순노무(회계, 전산, 총무, 행정 사무 등은 제외)**	• 감정평가법인 • 감정평가사사무소 • 한국감정평가사협회
4. 한국부동산원법에 따른 한국부동산원	• 감정평가에 관한 현장 조사, 연구 등 보조업무 **※ 단순노무(회계, 전산, 총무, 행정 사무 등은 제외)** • 타당성조사, 평가검토 등 감정평가 관련 업무	• 한국부동산원(구 한국감정원)
5. 국유재산 관리 기관	• 국유재산을 관리하는 업무	• 기획재정부 : 국유재산정책과, 국유재산조정과(구 국유재산과) 국유재산협력과
6. 감정평가업무 지도·감독 기관	• 토지수용 및 용지보상 • 공시지가 및 감정평가에 관한 제도운영 및 지도·감독 • 택지소유상한제 및 개발부담금제 운영	• 국토교통부 : 토지정책관(구 토지국) • 중앙토지수용위원회 • 지방국토관리청 : 보상과 • 국토관리사무소 : 운영지원과 (구 국도유지사무소 : 관리과)
	• 위 업무에 대한 지도감독	• 감사원 : 좌 업무 감사부서
7. 개별공시지가, 개별주택가격, 공동주택가격 결정·공시 업무를 수행 또는 지도·감독 기관	• 개별공시지가, 개별주택가격, 공동주택가격 결정·공시 업무	• 시·도·군·구 : 좌 업무 담당부서 • 한국부동산원(구 한국감정원) : 좌 업무 담당부서
	• 위 업무에 대한 지도 감독	• 감사원 : 좌 업무 감사부서
8. 토지가격비준표, 주택가격비준표 및 비주거용부동산가격비준표 작성 업무 수행 기관	• 토지가격비준표, 주택가격비준표, 비주거용부동산가격비준표 작성 업무	• 한국부동산원(구 한국감정원) : 좌 업무 담당부서
9. 과세시가표준액 조사·결정 업무 수행 또는 지도·감독 기관	• 과세시가표준액의 조사·결정	• 행정안전부 : 지방세정책과, 지방세운영과 (구 도세과, 구 시군세과) • 시·도·군·구 : 좌 업무 담당부서
	• 기준시가의 조사·결정	• 국세청 및 소속기관 : 재산세 관련과
	• 위 업무에 대한 지도·감독	• 감사원 : 좌 업무 감사부서

7. 제1차 시험 면제서류 제출안내

가. 제출 기간: 2026. 5. 13.(수) 09:00 ~ 5. 22.(금) 17:00 [토·일요일, 공휴일 제외]

※ 면제서류 심사 및 승인이 완료되어야 '경력에 의한 제1차 시험 면제자'로 원서 접수가 가능하므로 서류 제출 기간 초반에 제출을 권장함

나. 경력 서류 제출 면제

○ 2008년 이후 감정평가사 국가자격시험 일부 면제를 위해 경력증명 서류를 공단에 제출하여 승인받은 사람은 동일 서류 제출 면제

※ 별도 서류 제출 없이 인터넷 원서접수 가능

다. 제출 방법: 방문 및 등기우편 제출

○ 서류 제출 기관

기 관 명	담당부서	주 소	우편번호	연 락 처
서울지역본부	전문자격시험부	서울 동대문구 장안벚꽃로 279	02512	02-2137-0558
부산지역본부	필기시험부	부산 북구 금곡대로 441번길 26	46519	051-330-1822

※ 등기우편 제출 시 서류 제출 기관에 2026. 5. 22.(금) 17:00까지 도착분에 한하며, 봉투에 반드시 "감정평가사 시험 경력증명서 재중" 표기

※ 2026년 공단 조직개편에 따라 부서 및 연락처는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큐넷 감정평가사 홈페이지 참조(추후 공지)

라. 업무 종사 기간 산정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2항)

○ 경력 산정 기준일: 2026. 3. 1.

○ 2개 이상의 기관에서 해당 업무에 종사한 경우, 각 기간을 합산

※ 보완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시험 무효 처리

※ 경력 서류를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출하였음이 확인되는 경우(필요 시 방문 확인) 시험을 무효처리하고 5년간 시험응시 제한

마. 근무 기관별 제출 서류

- 공통서류: 모든 근무 기관 공통으로 수험자가 직접 작성 제출

■ 공통서류
① 감정평가사 시험 서류심사 신청서 【별지1】 1부.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별지2】 1부.

※ 【별지】 서식은 본 시행계획 공고문 p.22~27 참조

- 감정평가법인, 감정평가사사무소, 한국감정평가사협회 근무자

■ 공통서류 및 다음 두 가지 서류 모두 제출

① 공단양식의 경력증명서【별지3】 원본 1부.
- 사업주 직인날인 및 발급자 날인

②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국민연금가입증명원,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소득금액증명원(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첨부) 중 선택 1부.

※ 단,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별지2】의 행정정보공동이용 조회 동의 시 제출하지 않아도 됨.

- 감정평가법인, 감정평가사사무소 등 근무처의 부도·폐업 등으로 사업주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제출 서류

■ 공통서류 및 다음 세 가지 서류 모두 제출

① 공단양식의 경력증명서【별지3】 원본 1부.
- 응시자 본인이 직접 기재작성(사업주 직인날인 및 발급자 날인 생략)

②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국민연금가입증명원,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소득금액증명원(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첨부) 중 선택 1부.

※ 단,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별지2】의 행정정보공동이용 조회 동의 시 제출하지 않아도 됨.

③ 동일 직업에 종사하고 있는 입증인 1인의 사실확인서【별지4】와 함께 입증인 신분증 사본을 첨부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국민연금가입증명원,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는 인터넷 출력물도 제출 가능(단, 인터넷 원본대조 식별번호가 있어야 함)

※ 소득금액증명원(국세청/세무서)은 원본으로 제출하여야 하고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근무처 발행)은 사본 제출도 가능하나 반드시 발급자 원본대조필 확인 날인

※ 전자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삭제가 불가하므로 별도 서식 개선 전까지 **제출 서류에서 제외**

- 한국부동산원(구 한국감정원) 근무자

■ 공통서류 및 다음 서류 제출

① 한국부동산원 경력증명서 원본 1부
- 경력 인정 직급: 종합직, 일반직, 별정직, 전문직(서무원은 경력 적용 불가)

-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등

(1) 감정평가업무를 지도 또는 감독하는 기관
(2) 개별공시지가, 개별주택가격, 공동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는 업무를 수행하거나 그 업무를 지도·감독하는 기관
(3) 국유재산을 관리하는 기관
(4) 과세시가표준액을 조사·결정하는 업무를 수행하거나 그 업무를 지도·감독하는 기관

■ 공통서류 및 다음 두 가지 서류 모두 제출

① 공무원 경력증명서 원본 1부(공무원 외의 자는 해당기관 발급 경력증명서 원본 1부)

② 공단양식 경력증명서【별지3】원본 또는 업무수행 증빙서류(원본대조필 및 소속기관장 직인날인) 1부
- 공단 양식 경력증명서에는 공고문에 기재된 담당 업무 명시 후 소속기관장 직인날인

8. 공인어학성적

가. 제1차 시험 영어 과목은 영어시험성적으로 대체

○ 기준점수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

시험명	토플		토익	텝스	지텔프	플렉스	토셀	아이엘츠
	PBT	IBT						
일반 응시자	530	71	700	340	65 (level-2)	625	640 (Advanced)	4.5 (Overall Band Score)
청각 장애인*	352	-	350	204	43 (level-2)	375	145 (Advanced)	-

※ 청각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청각장애인을 말한다)의 경우 듣기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의 합계점수를 말함. 청각장애인의 기준 점수를 적용받으려는 수험자는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청각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원서접수 마감일부터 4일 이내에 장애인등록증의 사본을 원서접수 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영어성적의 인정범위는 **2022년 8월 20일 이후에 실시된 시험에서 제1차 시험일 전날(2026. 4. 3.)까지 발표되는 성적으**로서,

- 영어시험의 시행기관에서 정한 **성적의 자체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사전등록하여 진위가 확인이 된 성적에 한해 인정**

※ 2022년 8월 20일 전에 실시된 성적은 개정 시행령 시행일 전 유효기간 만료로 연장 규정이 미적용됨에 따라 인정 불가

○ 해당 외국어 시험기관의 **정기시험 성적만 인정**하고, 정부기관·민간회사·학교 등에서 승진·연수·입사·입학·졸업 등의 특정 목적으로 실시하는 수시 또는 특별시험은 인정하지 않음

○ 국외에서 취득한 공인어학성적도 인정

※ 단, 성적표 원본에 대사관 확인(단, 아포스티유 협약 가입국가는 아포스티유 증명서로 대체 가능)후 국내에서 한국어로 번역·공증 또는 외국어번역행정사가 발급한 번역 확인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함

- 단, TOEIC시험에 한해서는 대한민국과 일본에서 시행하는 정기시험 성적만 인정

※ 일본에서 취득한 토익성적의 경우 성적표 및 성적확인동의서【별지5】를 제출하여야 함

나. 영어성적 제출방법

※ 참고: 1차 합격 후 2차 불합격한 자가 다음 회차 1차 면제자로 접수할 경우 어학성적은 제출 불필요(공인어학성적은 1차 시험의 영어과목을 대체하는 것으로 2차 시험과는 무관함)

❖ **성적의 자체 유효기간이 경과된 경우 시험성적에 대한 진위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유효기간 만료 전 영어성적을 사전등록하여 "인정"을 받아야 함**

❖ **영어성적 신청서류 오류 및 서류보완으로 인한 시간 소요, 영어시험 시행기관의 진위확인 시간 소요 등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유효기간 경과 등)에 대한 책임은 신청인 본인에게 있으므로, 유효기간 만료 2개월 전까지 제출할 것을 권고**

※ **인정기준에 충족하는 성적을 기제출하여 승인 완료된 경우 추가 제출 불필요**
(기 제출내역은 감정평가사 홈페이지에서 로그인 후 '마이페이지-어학성적제출내역'에서 승인된 성적 확인가능)

※ **국가공무원 채용시스템 등 다른 기관에 등록된 자료(성적 등)는 인정되지 않음**

< 1 사전등록·제출 방법 >

※ 청각장애인 등 별도 성적기준을 적용받는 수험자는 온라인 다이렉트 제출이 불가하고, 성적표 및 장애인등록증 사본 등 증빙서류를 등기우편 또는 방문제출하여야 함

- (국내시행 TOEIC, G-TELP 및 TEPS) 성적의 자체 유효기간 만료 전 '큐넷 감정평가사 홈페이지-마이페이지-공인어학성적 제출' 메뉴를 통해 별도의 수수료 없이 24시간 상시 제출·다이렉트 인정(등록) 가능

< 공인어학성적 다이렉트 제출 서비스 이용 방법 >

- 큐넷 메뉴 : 감정평가사 홈페이지 ☞ 마이페이지- 공인어학성적 제출 메뉴 선택 ☞ 온라인 공인어학성적 제출 선택 ☞ 하단의 공인어학성적 제출하기 선택 ☞ 시험종류 선택 및 생년월일 입력 ☞ 어학성적 조회하기 선택 ☞ 어학기관 로그인 후 본인성적 리스트 중 원하는 어학성적 선택 ☞ 점수 및 입력 확인 후 하단의 제출하기 선택 ☞ 자동승인 후 승인된 어학성적 확인
- 승인 내역은 감정평가사 홈페이지-마이페이지-어학성적 제출내역에서 확인

- (TOEFL, FLEX, TOSEL, IELTS, TOEIC(일본) 및 국외취득성적) 등기우편 또는 직접 방문 제출하여 **진위여부가 확인된 성적에 한해 인정 가능**

<table>
<tr><th>구 분</th><th>내 용</th></tr>
<tr><td>제출시한</td><td>● <u>유효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u> 등기우편 또는 직접 방문 제출
* 영어시험의 시행기관에 진위확인 기간 확보를 위해 제출 시한을 준수하여야 함</td></tr>
<tr><td>제출기간</td><td>● 매월 초 1일부터 10일 까지(주말, 공휴일 제외)
* 제출한 성적을 영어시험 시행기관에 진위여부 조회 후 인정된 성적은 매월 말 전산에 일괄 승인 예정이며, 승인된 내역은 감정평가사 홈페이지-마이페이지-공인어학성적 제출내역에서 확인</td></tr>
<tr><td>제출서류</td><td>● 어학시험성적표 제출신청서【별지6】1부
● 공인어학성적표 원본 1부
- 단, <u>국외에서 취득한 경우</u>는 성적표 원본에 대사관 확인(아포스티유 협약 가입국가는 아포스티유 증명서로 대체)후 한국어로 번역·공증 또는 외국어번역행정사가 발급한 번역 확인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함
- <u>일본취득 TOEIC 성적</u>의 경우는 성적표 및 성적확인동의서【별지5】제출</td></tr>
<tr><td>제출처
및 연락처</td><td>
<table>
<tr><th>기관명</th><th>주소</th><th>우편번호</th><th>담당부서</th><th>연락처</th></tr>
<tr><td>서울지역본부</td><td>서울 동대문구 장안벚꽃로 279</td><td>02512</td><td>전문자격시험부</td><td>02-2137-0558</td></tr>
<tr><td>부산지역본부</td><td>부산 북구 금곡대로 441번길 26</td><td>46519</td><td>필기시험부</td><td>051-330-1814</td></tr>
<tr><td>대구지역본부</td><td>대구 달서구 성서공단로 213</td><td>42704</td><td>필기시험부</td><td>053-580-2385</td></tr>
<tr><td>광주지역본부</td><td>광주 북구 첨단벤처로 82번지</td><td>61008</td><td>필기시험부</td><td>062-970-1767</td></tr>
<tr><td>대전지역본부</td><td>대전 중구 서문로 25번길 1</td><td>35000</td><td>필기시험부</td><td>042-580-9133</td></tr>
</table>
</td></tr>
</table>

< 2 원서접수 시 제출 방법 >

<table>
<tr><th>구 분</th><th>사전 등록자</th><th>인정기준에 충족하는 성적을 취득한 사전 미등록자</th><th>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성적 미발표자</th></tr>
<tr><td>국내시행
TOEIC, G-TELP,
TEPS</td><td rowspan="2">추가 입력(제출) 불필요
(기승인된 성적 자동반영)</td><td>온라인 다이렉트 서비스로 제출(자동승인)
*유효기간이 만료된 성적은 제출 불가</td><td>'취득 예정'으로 접수하고 소명기한까지 온라인 다이렉트 서비스로 제출(자동승인)
*소명기한까지 미제출시 당해 시험 무효처리</td></tr>
<tr><td>TOEFL, FLEX,
TOSEL, IELTS,
TOEIC(일본)
및 국외취득성적</td><td>취득한 해당 영어시험 종류를 선택하고 입력화면에서 요청하는 응시일자 및 취득점수 등을 입력하여 접수하고 진위확인을 받아야 함
*착오 기재 시 성적표 원본 제출 등 소명 필요
*유효기간이 만료된 성적은 제출 불가</td><td>'취득 예정'으로 접수하고 소명기한까지 성적표 원본 등을 원서접수 기관으로 방문 및 등기우편으로 제출하여 진위확인을 받아야 함
*소명기한까지 미제출시 당해시험 무효처리</td></tr>
</table>

※ 청각장애인 등 별도 성적기준을 적용받는 수험자는 온라인 다이렉트 제출이 불가하고 원서접수 시 직접 성적을 입력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원서접수 마감일부터 4일 이내(접수기간 포함)에 성적표 및 장애인등록증 사본 등 증빙서류를 원서접수 기관에 제출

※ 공인어학성적 정보의 오입력 등으로 조회가능 기간(시험일로부터 2년) 내에 조회되지 않을 경우, 성적 진위여부 확인이 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외국어 시험 대체 불인정으로 시험 무효처리 등)은 전적으로 수험자의 귀책사유임

< 공인어학성적 입력 관련 유의사항 >

■ 해당 외국어시험기관의 성적조회결과 부적격자 및 성적 취득예정자는 성적표 원본제출 등을 통하여 소명할 수 있어야 하며(미소명시 제1차 시험 무효처리), **소명대상자 및 소명방법은 2026. 4. 1.(수) 큐넷 감정평가사 홈페이지에 공지 예정**

■ 공인어학성적 조회 결과 이상이 있는 경우, 소명 자료로 성적표 원본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니 사전에 준비(사전 출력 등)하시기 바랍니다.

※ 공단에 공인어학성적을 기 제출한 경우에는 감정평가사 홈페이지에서 로그인 후 '마이페이지-어학성적 제출내역'에서 확인가능

다. 공인어학성적의 위·변조 또는 부당한 목적으로 영어성적을 허위 입력한 경우 당해 시험은 무효 처리되며,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5년간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음

9. 응시원서 접수

가. 접수기간

○ 제1차 시험: 2026. 2. 2.(월) 09:00 ~ 2. 6.(금) 18:00 [5일간]

○ 제2차 시험: 2026. 5. 18.(월) 09:00 ~ 5. 22.(금) 18:00 [5일간]

나. 접수방법

○ 큐넷 감정평가사 홈페이지(http://www.Q-Net.or.kr/site/value)를 통한 온라인 원서접수

< 일반응시자 및 시험 일부면제자 공통사항 >

■ 공단 큐넷 감정평가사 홈페이지(http://www.Q-Net.or.kr/site/value)에서 인터넷 접수

■ 인터넷 원서접수시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상반신 사진을 파일(JPG, JPEG 파일, 사이즈 : 300×400 이상, 300DPI 권장, 200KB 이하)로 첨부하여 인터넷 회원가입 후 원서접수(단, 기존 Q-Net 회원일 경우는 바로 원서접수 가능)

※ 원서접수 시 반드시 본인의 사진을 등재하여야 하며, 타인의 사진을 잘못 등재 한 경우에는 부정 행위자로 처리 될 수 있음

※ 인터넷 활용이 어려운 수험자를 위한 접수 도우미 운영(전국 공단지부, 지사)

※ 단체접수는 불가함

○ 원서접수 마감시각까지 수수료를 결제하고, 수험표를 출력하여야 접수 완료

다. 수수료 납부

○ 응시수수료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제1항)

- (제1차 시험) 40,000원, (제2차 시험) 40,000원

○ 납부방법: 전자결제(신용카드, 계좌이체, 가상계좌, 간편결제, 퀵계좌이체) 이용

※ 결제수수료는 공단에서 부담

※ 가상계좌는 접수완료 시점이 13시 이전은 당일 14시까지 입금완료, 13시 이후는 익일 14시까지 입금완료 해야 함(지정 시간까지 미입금 시, 원서접수가 취소됨)

※ 접수마감일은 13시부터 18시까지 가상계좌 결제 불가하고 타 결제수단만 이용가능

라. 수수료 환불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 접수 취소 및 응시수수료 환불 신청은 큐넷 감정평가사 홈페이지-마이페이지에서만 가능

※ 접수 취소 및 환불은 시험 시행일 10일 전까지만 가능

구 분	환 불 기 준
100% 환불	• 응시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과오납 금액분만 환불) • 시험관리기관(한국산업인력공단)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는 경우 • 원서 접수기간 내에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60% 환불	• **원서접수 마감일 다음날부터 시험시행일 2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50% 환불	• **시험시행일 19일전부터 1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환불 불가	• 정해진 환불기간 종료 후 환불신청을 한 경우 • 시험 결시자 • 응시자격 부적격으로 합격예정이 취소된 경우
* 시험관리기관의 귀책사유라 함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같은 시험 일자에 2개 이상의 자격으로 접수되어 한 자격을 응시하지 못하게 된 경우(시험일시를 사전에 고지한 경우는 제외) 2. 수험원서를 접수한 광역지방자치단체 행정구역 이외의 다른 광역지방자치단체 행정구역으로 시험장이 배정되어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시험장소를 사전에 고지하여 수험자가 선택한 경우는 제외) 3. 시험시설장비의 고장, 정전, 단수, 천재지변, 감염병 예방 등으로 시험시행을 하지 못한 경우 4. 기타 시험 관련 고지 오류로 인하여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착오에 대한 정정공지를 하였을 경우는 제외)	

※ 이외에 환불 가능한 경우

사후환불	• 본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수험자의 가족(배우자·부모·(외)조부모·형제·자매·자녀)이 **시험일 이후 30일까지 환불을 신청**한 경우에는 응시수수료의 100% (가족관계증명서, 사망확인서 첨부) • 시험일 7일전부터 시험일까지의 기간 중 다음 사람(수험자의 배우자, 수험자 본인 및 배우자의 자녀·부모·(외)조부모·형제자매)이 사망하여 장례 등의 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수험자가 **시험일 이후 30일까지 환불을 신청**한 경우 응시수수료의 100% (가족관계증명서, 사망확인서 첨부)

	• 본인의 사고 및 질병으로 입원(시험일이 입원기간에 포함)하여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수험자가 **시험일 이후 30일까지 환불을 신청**한 경우 응시수수료의 100% (의료기관의 입원확인서 첨부) • **국가가 인정하는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 발생 시 국가(공공기관 포함) 및 의료기관으로부터 감염확정 판정을 받거나, 격리대상자로 판정(격리기간에 시험일 포함)되어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수험자가 시험일 이후 30일까지 환불을 신청한 경우** 응시수수료의 100%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질병관리청장이 지정하는 감염병의 종류 고시」에서 지정한 제1급 및 제2급 감염병 • 북한의 포격도발 등 심각한 국가 위기단계로 휴가, 외출 등이 금지되어(금지기간에 시험일이 포함)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군인 및 군무원 수험자가 **시험일 이후 30일까지 환불을 신청한 경우** 응시수수료의 100% (중대장 이상이 발급한 확인서 첨부) • 예견할 수 없는 기후상황으로 본인의 거주지에서 시험장까지의 대중교통 수단이 두절되어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수험자가 시험일 이후 30일까지 환불을 신청한 경우** 응시수수료의 100% (재난문자 송신내역, 주민등록등본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 첨부) • 예견할 수 없는 기후상황으로 비상근무 명령을 받아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군·경찰·소방 및 공무원 등 수험자(시험전일 야간 비상근무자 포함)가 **시험일 이후 30일까지 환불을 신청한 경우** 응시수수료의 100% (근무명령 공문, 재직증명서 등 증빙자료 첨부) ☞ **시험일 이후 환불을 신청할 경우 큐넷 메인 마이페이지-원서접수관리-사후환불신청에서 신청**

마. 수험표 교부

○ 수험표는 인터넷 원서접수가 정상적으로 처리되면 출력 가능

○ 수험표 분실 시 시험당일까지 인터넷으로 재출력 가능

○ 수험표에는 시험일시, 입실시간, 시험장 위치(교통편), 수험자 유의사항 등이 기재되어 있음

바. 원서접수 완료 후(결제 완료 후) 접수내용 변경 방법

○ 원서접수 기간 내에 접수 취소 후 재접수하여야 하며, 원서접수 마감 이후에는 재접수 및 접수내용 변경 불가

사. 장애인 등 응시편의 제공

○ 장애인 및 기타 응시편의 제공 요청자의 경우 원서접수 시 해당 편의 제공 유형 및 요청사항을 선택하고 해당 장애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음

- **(제출방법 1: 온라인 제출)** 원서접수 기간 내 [큐넷 마이페이지-원서접수내역-응시시험 편의제공사항 수정 및 확인]에서 증빙서류 업로드

- **(제출방법 2: 우편 또는 방문제출)** 원서접수 마감 후 4일 이내**(접수기간 포함)**에 시험 시행기관**(관할 지역본부)**에 등기우편 또는 방문 제출

○ 척추장애는 기본적으로 하지장애로 구분하며, 의료법 제3조에 의한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상지장애 진단서**(장애정도 표기 필요, 소견서 불인정)** 제출 시, 상지장애로 구분

○ 일시적 신체장애 수험자 중 시험시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는 의료법 제3조에 의한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진단서 제출**(진단서 유효기간 명시 필요, 소견서 불인정)**

○ 대장장애 등 배변에 장애가 있는 수험자는 의료법 제3조에 의한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제출한 경우 시험 중 화장실 출입 허용**(임신부는 의료법 제3조에 의한 의원급 또는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소견서, 임신사실확인서, 건강보험 임신·출산진료비 지급 신청서 제출 시 인정 가능, 이외 수험자는 시험 중 화장실 출입 불가)**

<의사진단서 발급 시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내용>

1. 장애 유형 및 정도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시각장애: 시력 또는 시야각 명기)
2. 장애로 인한 시험응시 시 불편 사항
3. 제공 받고자 하는 편의 제공 항목에 대한 필요성 인정 여부
4. 진단서 유효기간
   - 유효기간이 기입되지 않은 경우 발급일로부터 2년간 유효
   - 단, 원서접수 시 신청한 내용과 의사진단서 기재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의사진단서에 따름

※ 증빙서류 미제출 시, 일반 수험자와 동일한 방법으로 응시해야 함

※ 유형별 응시편의 제공에 대한 세부내용은 Q-Net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조

< 유형별 편의제공 적용 기준(지적장애인 포함) >

편의제공 대상		편의구분	필기 및 필답형(동영상) 실기시험	작업형 실기시험	제출 서류
시각 장애	중증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시험시간	- 시험시간 1.7배 연장	- 시험시간 1.5배 연장	①,②,③ 호 중 하나
		문제인지 방법	- 음성지원컴퓨터 - 문제지대독 - 점자 문제지 - 확대 문제지 - 점자정보단말기 - 독서확대기 지참 허용 ※ 상기 항목 중 택1	- 문제지대독	
		답안작성 방법	- 답안대필 - 확대 답안지 - 점자 답안지 - 점자정보단말기 - 음성지원컴퓨터 활용 ※ 상기 항목 중 택1	-	
		기타	- 별도시험실 배정	-	

편의제공 대상		편의구분	필기 및 필답형(동영상) 실기시험	작업형 실기시험	제출 서류
	경증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시험시간	- 시험시간 1.5배 연장	- 시험시간 1.3배 연장	①,②,③ 호 중 하나
		문제인지 방법	- 확대 문제지 - 독서확대기 지참 허용 ※ 상기 항목 중 택1	-	
		답안작성 방법	- 확대 답안지	-	
		기타	- 별도시험실 배정	-	
뇌병변 장애	장애정도 구분 없음	시험시간	- 시험시간 1.5배 연장	- 시험시간 1.3배 연장	①,②,③ 호 중 하나
		답안작성 방법	- 답안대필	-	
		기타	- 별도시험실 배정(좌석 간격 조정)	-	
지체 장애	(1) 상지 중증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시험시간	- 시험시간 1.5배 연장	- 시험시간 1.3배 연장	①,②,③ 호 중 하나
		답안작성 방법	- 답안대필	-	
		기타	- 별도시험실 배정	-	
	(2) 상지 경증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시험시간	- 시험시간 1.2배 연장	- 시험시간 1.2배 연장	①,②,③ 호 중 하나
		답안작성 방법	- 답안대필	-	
		기타	- 별도시험실 배정	-	
	(3) 하지(장애정도 구분 없음, 척추장애* 포함)	시험시간	- 일반 수험자와 동일	- 시험시간 1.1배 연장	①,②,③ 호 중 하나
		기타	- 별도시험실 배정(좌석 간격 조정)	-	
지체 장애	(4) 복합장애 [상지+하지]	시험시간	- 상지 지체장애와 동일	- (1) 또는 (2)의 장애 정도에 부여한 시간 + (3)의 장애 시 추가 부여한 시간 연장	①,②,③ 호 중 하나
		답안작성 방법 및 기타	- 상지 지체장애와 동일	-	
청각 장애	장애정도 구분 없음	기타	- 보청기 사용 - 수화통역사 또는 문자통역사 배치 - 응시요령 등 서면자료 제공 - 별도시험실 배정		①,②,③ 호 중 하나
지적 장애	장애정도 구분 없음	시험시간	- 시험시간 1.5배 연장	-	①, ②+④, ③+④호 중 하나
		기타	- 별도 시험실 배정		
신장 심장 장루요루 장애	장애정도 구분 없음	기타	- 시험 중 화장실 이용 제한(횟수 및 시간) 없음		①,②,③ 호 중 하나
시험 응시에 지장이	일시적 신체장애	편의제공 사항 전반	- 장애 유형 및 정도를 검증하여 결정		④호

편의제공 대상		편의구분	필기 및 필답형(동영상) 실기시험	작업형 실기시험	제출 서류
있다고 의료 기관장이 인정한 자	과민성대장증후군, 과민성방광증후군	기타	- 시험 중 화장실 이용 제한(횟수 및 시간) 없음		
	임신부	기타	- 시험 중 화장실 이용 제한(횟수 및 시간) 없음		⑤호 중 하나

※ 시험시간을 제외한 편의 제공사항은 수험자의 요청 및 시험시행 환경 등에 따라 시험 시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정될 수 있음

※ 척추장애는 기본적으로 하지장애로 구분하며 의료법 제3조에 의한 병원에서 발급한 상지장애 진단서(장애정도 표기 필요, 소견서 불인정) 제출 시 상지장애로 구분

※ 두가지 이상의 장애유형을 동시에 가진 수험자에 대한 시험시간 연장 기준은 각 장애유형별 편의제공 기준에 따른 연장시간을 합산하여 적용한다.

<시간 산정 방법 예시>

• 시험시간이 60분인 경우(시각장애 경증 + 지체장애 중증상지장애) 필기(답) 시험 적용 시)
⇒ 시각장애 경증에 부여한 시간[표준시간(60분) + {(60분)*0.5)=90분]
+ 지체장애 중증상지장애에 부여한 시간[(60분*0.5)=30분] = 120분

※ 제출서류

①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의한 장애인은 시장·도지사·군수·구청장이 발행한 장애인증명서 또는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1부. 다만, 지체장애인, 두 가지 이상의 장애를 가진 장애인의 경우에는 장애인증명서 1부.

②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의한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자는 국가보훈부장관이 발행한 국가보훈등록증(구 국가유공자증 포함)과 상이처와 상이내용 확인이 가능한 서류(상이판정 신체검사 결과통지서 등) 각 1부.

③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제1항에 의한 장해급여지급 대상자로 결정된 자는 관계기관이 발행한 보험급여지급확인원 1부.

④ 의료법 제3조에 의한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진단서 또는 소견서 1부.

- 편의제공 요청사항 중 시험시간 연장이 포함될 경우 의료법 제3조에 의한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진단서 1부.

• 의사진단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1. 장애 유형 및 정도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시각장애: 시력 또는 시야각 명기)
2. 장애로 인한 시험응시 시 불편 사항
3. 제공 받고자 하는 편의 제공 항목에 대한 필요성 인정 여부
※ 장애인 등 유형별 편의제공 사항을 참조하여 제공 받고자 하는 해당 항목을 구체적으로 기재

⑤ 임신부의 경우, 아래 서류 중 하나를 제출하여야 함.

-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의사의 소견서 1부.
-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임신(사실)확인서 1부.
- 담당 의사의 확인이 포함된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054호) 별지 제1호 서식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신청서' 1부.

※ 상이등급자인 경우 장애인복지법상의 장애정도를 기준으로 본인이 어떤 장애유형 및 정도에 해당하는지 확인

※ 복합장애인(상지+하지)에 대한 시간 산정 방법(예시)

• 시험시간이 60분인 경우(지체장애 중증상지장애① + 하지장애③ 작업형 시험 적용 시)
⇒ ①의 장애 정도에 부여한 시간[표준시간(60분) + {(60분)*0.3)=78분]
+ ③의 장애 시 추가 부여한 시간[(60분*0.1)=6분] = 84분

10. 가답안 공개 및 의견제시 접수

가. 공개 및 신청기간

○ 제1차 시험: 2026. 4. 4.(토) 17:00 ~ 4. 10.(금) 18:00 <7일간>

나. 공개 및 신청 방법: 큐넷 감정평가사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 및 접수

※ 가답안 의견제시에 대한 개별회신은 하지 않으며, 합격자 발표 시 공고하는 최종정답 발표로 갈음

11. 합격자 발표 및 자격증 발급

가. 합격자 발표

○ 제1차 시험: 2026. 5. 6.(수) 09:00

○ 제2차 시험: 2026. 10. 21.(수) 09:00

○ 발표 방법

- 큐넷 감정평가사 홈페이지(http://www.Q-Net.or.kr/site/value) **[60일간]**
- 관보 게재(제2차 시험)

나. 자격증 발급 및 실무 수습 교육 안내

○ 자격증 발급자 명의: 국토교통부장관

○ 자격증 발급 및 실무 수습 교육기관: 한국감정평가사협회

- 자격증 신청 및 문의: 협회 운영지원실(☎ 02-3465-9914)
- 교육 안내: 협회 연수원(☎ 02-3465-9813)

※ 신청 방법 및 발급 절차는 제2차 시험 합격자 발표 시 별도 공지 예정

○ 감정평가사 자격을 취득한 자가 감정평가 업무를 하려는 경우 다음의 기간 동안 실무 수습 교육을 받아야 함

1, 2차 응시한 최종 합격자	경력으로 1차 면제받은 최종 합격자
실무 수습 기간 1년	실무 수습 기간 4주일

12. 수험자 유의사항

【 제1·2차 시험 공통 수험자 유의사항 】

1. 수험원서 또는 제출서류 등의 허위작성·위조·기재오기·누락 및 연락불능의 경우에 발생하는 불이익은 전적으로 수험자 책임입니다.

   ※ Q-Net의 회원정보에 반드시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로 수정

   ※ 알림서비스 수신동의 시에 시험실 사전 안내 및 합격축하 메시지 발송

2. 수험자는 시험시행 전까지 시험장 위치 및 교통편을 확인하여야 하며 (단, 시험실 출입은 할 수 없음), 시험당일 교시별 입실시간까지 신분증, 수험표, 필기구를 지참하고 해당 시험실의 지정된 좌석에 착석하여야 합니다.

   ※ 매 교시 시험시작 이후 입실 불가

   ※ 신분증 인정 범위

신분증 인정기준

① 사진, 주민등록번호(최소 생년월일), 성명, 발급자(직인 등)가 모두 기재된 경우에 한하여 유효·인정
② 일체 훼손·변형*이 없는 원본 신분증인 경우만 유효·인정**
* 사진 또는 외지(코팅지)와 내지가 탈착·분리 등의 변형이 있는 것, 훼손으로 사진·인적사항 등을 인식할 수 없는 것 등
** 다만, 신분증이 훼손된 경우, 시험응시는 허용하나, 별도절차를 통해 사후 신분확인 실시
③ 아래 인정신분증에 포함되지 않는 증명서 등은 ①, ②항의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신분증으로 인정하지 않음
④ 아래 인정신분증의 경우 ①, ②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신분증으로 인정하지 않음

인정신분증

<table>
<tr><td rowspan="6">모든 수험자 공통 적용 신분증</td><td>모바일 신분증</td><td colspan="7">
<table>
<tr><th>구분 \ 발급처</th><th>모바일 신분증앱</th><th>삼성월렛</th><th>네이버</th><th>토스</th><th>카카오뱅크</th><th>KB 스타뱅킹</th><th>농협은행</th></tr>
<tr><td>① 모바일 주민등록증</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r>
<tr><td>② 모바일 운전면허증</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r>
<tr><td>③ 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r>
<tr><td>④ 모바일 공무원증</td><td colspan="7">모바일 공무원증 앱에서 확인(해당 앱은 관리자의 승인을 받은 사용자만 설치 가능)</td></tr>
</table>
</td></tr>
<tr><td>모바일 신분확인 서비스</td><td colspan="7">① (모바일 주민등록증 확인서비스) 정부24· PASS앱· KB스타뱅킹 국민지갑· 우리WON뱅킹 원더월렛 등을 통한 모바일 주민등록 확인
②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서비스) PASS앱 등을 통한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td></tr>
<tr><td>모바일 국가기술자격증(확인)</td><td colspan="7">① 큐넷 전자지갑 및 모바일신분증앱에 발급된 모바일 국가기술자격증
② 정부24·PASS·네이버·카카오·삼성월렛 등을 통해 전자증명서 형태로 발급된 국가기술자격증(상장형)
③ 네이버 자격증 서비스를 통한 국가기술자격증</td></tr>
<tr><td>실물 신분증</td><td colspan="7">① 주민등록증(주민등록증발급신청확인서(유효기간 이내인 것))
② 운전면허증(경찰청에서 발행된 것)
③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
④ 여권
⑤ 공무원증(장교·부사관·군무원신분증 포함)
⑥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주민등록번호가 표기된 것)
⑦ (구)국가유공자증 및 국가보훈등록증
⑧ 국가기술자격증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거 한국산업인력공단 등 10개 기관에서 발행된 것
⑨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증(해양경찰청에서 발행된 것)</td></tr>
<tr><td rowspan="3">대상자별 추가 인정 가능 신분증</td><td>초·중·고등학생 및 만18세 이하인 자</td><td colspan="7">① 초·중·고등학교 학생증(사진·생년월일·성명·학교장 직인이 표기·날인된 것)
② NEIS 및 정부24를 통해 발급(흑백,컬러)된 재학증명서(사진·생년월일·성명·학교장 직인이 표기·날인되고, 발급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
* 스마트폰을 활용할 경우 정부24앱 전자문서지갑에 발급된 재학증명서만 인정
③ 국가자격검정용 신분확인증명서(별지1호 서식에 따라 학교장 확인·직인이 날인되고, 유효기간 이내인 것)
④ 청소년증(청소년증발급신청확인서(유효기간 이내인 것) 포함)
⑤ 국가자격증(국가공인 및 민간자격증 불인정)</td></tr>
<tr><td>미취학 아동</td><td colspan="7">① 한국산업인력공단 발행 “국가자격검정용 임시신분증”(별지2호 서식에 따라 공단 직인이 날인되고, 유효기간 이내인 것)
② 국가자격증(국가공인 및 민간자격증 불인정)</td></tr>
<tr><td>사병(군인)</td><td colspan="7">① 국가자격검정용 신분확인증명서(별지1호 서식에 따라 소속부대장이 증명·날인하고, 유효기간 이내인 것)</td></tr>
</table>

	외국인	① 외국인등록증 및 모바일외국인등록증* * 모바일신분증앱, 삼성월렛, 네이버, 토스, 카카오뱅크, KB스타뱅킹, 농협은행 앱에 발급된 것 ② 외국국적동포국내거소신고증 ③ 영주증

국가자격검정용 신분확인 증명서 유의사항
① 사진은 발급일 전 6개월 이내에 모자 등을 쓰지 않고 촬영한 상반신 정면 컬러 사진으로 개인식별이 가능한 것이어야 함 ② 사진 부착 시에는 사진과 종이여백이 상호 겹치게 기관직인(학교장 또는 부대장)을 날인하고 사진 전체를 스카치테이프(투명)로 부착해야 함(단, 사진을 따로 부착하지 않고, 전자파일을 증명서와 함께 출력한 경우 생략 가능)

신분증 인정이 불가능한 사항 예시
○ 초·중·고등학교 학생증 또는 NEIS 및 정부24 재학증명서에 사진·성명·주민등록번호(생년월일)·학교장 직인 중 하나라도 표기되지 않은 경우 ○ 신분증 원본이 아닌 화면 캡처본, 녹화·촬영본, 복사본 등 ○ NEIS 및 정부24에서 발행되지 않은 재학증명서 ○ 건강보험증, 주민등록초본, 대학학생증, 사원증, 민간자격증, 신용카드, 운전경력증명서 등

※ 원본이 아닌 화면 캡처본, 녹화·촬영본, 복사본 등은 신분증으로 불인정

※ 신분증미지참자는 응시 불가

3. 본인이 원서접수 시 선택한 시험장이 아닌 다른 시험장이나 지정된 시험실 좌석 이외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4. 시험시간 중에는 화장실 출입이 불가하고 종료 시까지 퇴실할 수 없습니다.
   ※ '시험 포기 각서' 제출 후 퇴실한 수험자는 다음 교(차)시 재입실·응시 불가 및 당해 시험 무효(0점) 처리
   ※ 단, 설사/배탈 등 긴급사항 발생으로 중도 퇴실 시, 해당 교시 재입실이 불가하고, 시험시간 종료 전까지 시험본부에 대기

5. 결시 또는 기권, 답안카드(답안지) 제출 불응한 수험자는 해당교시 이후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6. 시험 종료 후 감독위원의 답안카드(답안지) 제출지시에 불응한 채 계속 답안카드(답안지)를 작성하는 경우 당해시험은 **무효(0점)처리** 하고 부정행위자로 처리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7. 수험자는 감독위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부정한 행위를 한 수험자에게는 **당해 시험을 무효(0점)**로 하고, 그 처분일로부터 **5년간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16조)**

8. 시험실에는 벽시계가 구비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개인용 시계(**손목시계, 탁상시계 등)를 준비**하여 시간관리를 하시기 바라며, **스마트밴드, 스마트워치** 등 전자·통신기기는 시계대용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시험시간은 타종에 의하여 관리되며, 교실에 비치되어 있는 시계 및 감독위원의 시간안내는 단순참고사항이며 시간 관리의 책임은 수험자에게 있음
   ※ 손목시계는 시각만 확인할 수 있는 단순한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통신, 계산 또는 검색이 가능한 스마트워치 등 부정행위에 활용될 수 있는 일체의 시계 사용을 금함
   ※ 시험시간 중 개인용 시계의 알람 등이 울려 시험 진행을 방해한 경우 응시 제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9. 전자계산기는 필요 시 1개만 사용할 수 있고 공학용 및 재무용 등 데이터 저장기능이 있는 전자계산기는 **수험자 본인이** 반드시 메모리(SD카드 포함)를 제거, 삭제(리셋, 초기화)하고 시험위원이 초기화 여부를 확인할 경우에는 협조하여야 합니다. 메모리(SD카드 포함) 내용이 제거되지 않은 계산기는 사용 불가하며 사용 시 부정행위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 단, 메모리(SD카드 포함) 내용이 제거되지 않은 계산기는 사용 불가

※ 시험일 이전에 리셋 점검하여 계산기 작동여부 등 사전확인 및 재설정 (초기화 이후 세팅) 방법 숙지

10. 시험시간 중에는 **통신기기 및 전자기기**[휴대용 전화기, 휴대용 개인정보 단말기(PDA), 휴대용 멀티미디어 재생장치(PMP), 휴대용 컴퓨터, 휴대용 카세트, 디지털 카메라, 음성파일 변환기(MP3), 휴대용 게임기, 전자사전, 카메라펜, 시각표시 외의 기능이 부착된 시계, 스마트워치 등]를 일체 휴대할 수 없으며, **금속(전파)탐지기** 수색을 통해 시험도중 관련 **장비를 소지·착용**하다가 적발될 경우 실제 사용여부와 관계없이 **당해 시험을 정지(퇴실) 및 무효(0점) 처리**하며 **부정행위자로 처리될 수 있음**을 유의하기 바랍니다.

※ 전자·통신기기(전자계산기 등 소지를 허용한 물품 제외)의 **시험장 반입 원칙적 금지**

※ 휴대폰은 전원OFF하여 시험위원 지시에 따라 보관

11. 시험 당일 시험장 내에는 주차공간이 없거나 협소하므로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시고, 교통 혼잡이 예상되므로 미리 입실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2. 시험장은 전체가 금연구역이므로 흡연을 금지하며,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거나 시설물이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 바랍니다.
13. 가답안 발표 후 의견제시 사항은 반드시 정해진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접수 취소 시 시험응시 수수료 환불은 정해진 규정 이외에는 환불받을 수 없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5. 기타 시험 일정,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큐넷 감정평가사 홈페이지의 시행공고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은 수험자의 귀책입니다.
16. 응시 편의 제공을 요청하고자 하는 수험자는 감정평가사 국가자격 시험 시행계획 공고문의 “장애인 등 유형별 편의 제공사항”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편의 제공을 요구하지 않거나 해당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응시 편의 제공 대상 수험자는 일반수험자와 동일한 조건으로 응시하여야 함(응시 편의 제공 불가)

【 제1차 시험 수험자 유의사항 】

1. 답안카드에 기재된 **'수험자 유의사항 및 답안카드 작성 시 유의사항'**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2. 수험자 교육시간에 감독위원 안내 또는 방송(유의사항)에 따라 답안카드에 수험번호를 기재 마킹하고, 배부된 시험지의 인쇄상태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3. 답안카드는 국가전문자격 공통 표준형으로 문제번호가 1번부터 125번까지 인쇄되어 있습니다. 답안 마킹 시에는 반드시 시험문제지의 문제번호와 **동일한 번호에 마킹**하여야 합니다.
   ※ 답안카드 견본을 큐넷 감정평가사 홈페이지에 공개
4. 답안카드 기재·마킹 시에는 **반드시 검은색 사인펜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 필기구는 본인 지참으로 별도 지급하지 않으며, 지워지는 펜 사용 불가
5. 채점은 전산 자동 판독 결과에 따르므로 유의사항을 지키지 않거나 (검은색 사인펜 미사용) 수험자의 부주의(답안카드 기재·마킹 착오, 불완전한 마킹·수정, 예비마킹 등)로 판독불능, 중복판독 등 불이익이 발생할 경우 **수험자 책임**으로 이의제기를 하더라도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 답안을 잘못 작성했을 경우, 답안카드 교체 및 수정테이프 사용 가능(단, 답안 이외 수험번호 등 인적사항은 수정 불가)하며 재작성에 따른 시험시간은 별도로 부여하지 않음
   ※ 수정테이프 이외 수정액 및 스티커 등은 사용 불가

【 제2차 시험 수험자 유의사항 】

1. 국가전문자격 주관식 답안지 표지에 기재된 **'답안지 작성 시 유의사항'**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2. 수험자 인적사항·답안지 등 작성은 반드시 **검은색 필기구만 사용**하여야 합니다.(그 외 연필류, 유색 필기구, 2가지 이상 혼합사용 등으로 작성한 **답항은 채점하지 않으며 0점 처리**)
   ※ 필기구는 본인 지참으로 별도 지급하지 않음
   ※ 지워지는 펜 사용 불가
3. **답안지의 인적사항 기재란 외의 부분에 특정인임을 암시하거나** 답안과 관련 없는 특수한 표시를 하는 경우, **답안지 전체를 채점하지 않으며 0점 처리**합니다.
4. 답안 정정 시에는 반드시 정정 부분을 두 줄(=)로 긋고 다시 기재하거나 수정테이프를 사용하여 수정하며, 수정액 등을 사용했을 경우 채점상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사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 **감정평가사 시험의 엄정·공정한 시험 관리를 위해 수험생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기타 시험에 관한 더 자세한 사항은 큐넷 홈페이지(www.Q-Net.or.kr/site/value) 참조 또는 HRD고객센터(☎1644-800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별지 1】 감정평가사 서류제출 시 공통작성

제37회 감정평가사 시험 서류심사 신청서

1. 수험자 기재사항

성 명		주민등록 번 호		~	
E-mail					
전화번호	휴대전화 :		일반전화 :		

2. 제출서류 내역 (해당란에 체크☑)

경력에 의한 제1차 시험 면제 신청자	□공무원 경력증명서 원본	□소득금액증명원
	□공단 양식 경력증명서 원본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업무분장 사본 (원본대조필 및 소속기관장 직인날인)	□사실확인서
	□기타	□입증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국민연금가입증명원 □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 ※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조회 동의 시 공단에서 직접 전산 조회 가능	

본인은 감정평가사 시험응시를 위한 증명서류를 붙임과 같이 제출하고, 증빙서류의 진위확인을 위하여 서류발급기관에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조회하는데 동의하며, 이 신청서에 첨부된 증명서 및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작성된 경우에는 당해 시험을 무효로 함은 물론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음을 서약하고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한국산업인력공단 이 사 장 귀하

【별지 2】 감정평가사 서류 제출 시 공통작성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한국산업인력공단(이하 "공단"이라 함)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6항에 규정된 공공기관으로서 같은 법 에 따라, 수험자 본인의 동의를 통하여 개인정보(고유식별정보 포함)를 수집·이용 및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합니다. 아래의 내용을 확인하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수집·이용 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기간
▪ 성명, 국적, 연락처, 주소, 전자메일주소, 경력사항 ▪ 본인이 응시·면제 심사를 받기 위해 제출한 기타 입증자료	공단 시행 감정평가사 시험의 업무처리 (응시·면제자격 서류심사 등)	감정평가사 국가자격시험 관리업무를 계속하는 동안 (준영구)

※ 위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대하여 동의를 거부할 경우 감정평가사 국가자격시험 응시 또는 면제를 위한 서류심사가 불가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 ☐ 미동의

2.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

제공받는 자	수집·이용 항목	제공 목적	보유기간
국토교통부, 한국감정평가사협회,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한국TOEIC위원회 등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한 공인어학시험의 실시기관 및 응시·면제 자격심사자(기관)	▪ 성명, 국적, 연락처, 주소, 전자메일주소, 경력사항 ▪ 본인이 응시·면제 심사를 받기 위해 제출한 기타 입증자료	공단 시행 감정평가사 시험의 업무처리 (응시·면제자격 서류심사 등)	▪ 국토교통부 : 감정평가사 시험 관련 업무를 계속하는 동안(준영구) ▪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한국감정평가사협회 : 각 기관이 정한 문서 보존기간 동안

※ 위의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동의를 거부할 경우 감정평가사 국가자격시험 응시 또는 면제를 위한 서류심사가 불가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 ☐ 미동의

3. 동의 없이 수집·이용하는 개인정보 내역 고지

개인정보 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기간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여권번호	▪ 시험의 시행 ▪ 시험 합격자의 관리 ▪ 감정평가사 자격증의 발급 및 관리	▪ 국토교통부, 한국감정평가사협회 : 감정평가사 시험 관련 업무를 계속하는 동안(준영구) ▪ 응시·면제자격 심사기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한 공인어학시험의 실시기관: 각 기관이 정한 문서보존기간동안

※ 수집근거: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4. 행정정보공동이용 조회 동의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

조회 항목	조회 목적
▪ 국민연금가입자 가입증명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감정평가사 자격시험의 업무처리(응시·면제자격 서류심사 등)

※ 위의 행정정보공동이용 조회에 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신청인이 직접 4대 보험 가입 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행정정보공동이용조회에 동의하십니까? (택일)

▪ 국민연금가입자 가입증명 ☐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	▪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
☐ 동의 ☐ 미동의		

본인은 본 동의서의 내용과 개인정보 수집·처리 및 제3자 제공에 관한 본인의 권리를 이해하고 서명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한국산업인력공단 이 사 장 귀하

* 점선 이하는 공단직원이 작성하는 곳으로 수험자는 작성하지 마십시오.

조회정보	국민연금가입증명 ☐	건강보험자격득실 ☐	고용보험피보험자격 ☐	확인일자		직원성명		(인)

※ 필요한 경우 본인이 면제 심사를 받기 위해 제출한 기타 입증자료를 입증하기 위해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를 재징구할 수 있음

【별지 3】 감정평가법인, 사무소, 협회 근무자 및 공무원 경력 보완용도

경력(재직) 증명서

수험자 주소			전화번호	
수험자 성명	(한글)	주민등록번호	-	

증명사항	재직기간			근무처	직위	담당업무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1항에서 정한 기관에서 감정평가와 관련 업무에 종사하였음을 증명하기 위한 경력(재직)증명서를 제출합니다.

수험자 (서명 또는 인)

위 사항이 사실과 다름없음을 증명합니다.
(이하 근무기관 기재사항)

년 월 일

기 관 명 :
기관주소 :
전화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
대 표 자 : (직인)

발급자 (서류발급 담당자)	
소속	
직위	
성명	㊞

한국산업인력공단 이 사 장 귀하

※ **주의사항**

- 이 증명은 감정평가사 제1차 시험 면제를 위한 경력 증명을 위한 것이므로 **허위작성 또는 위조** 등으로 사실과 다를 때에는 **해당 시험의 무효처리 및 형사처벌**(공·사문서의 위조, 변조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 단순노무(회계, 전산, 총무, 행정 사무 등)종사자에 대하여 "감정평가에 관한 현장조사, 연구 등 보조업무"로 담당업무를 기재하여 경력(재직)증명서 발급 시 허위작성으로 간주

【별지 4】 감정평가법인, 사무소, 협회의 부도·폐업 등으로 경력증명서에 사업주 날인이 불가한 경우 작성

사 실 확 인 서

※ 본 사실확인서는 (감정평가사) 국가자격시험에 필요한 경력 사실이며, 아래의 증명이 허위, 위조 등 사실과 다를 때에는 형사처벌(공·사문서 위조, 변조 등)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아래의 경력 사실을 입증합니다.

(입증인) 성명 : (인)

□ 입증인 인적 사항

입 증 인 성 명				생 년 월 일	
연락처(휴대전화)				수험자와의 관계	
주 소					
근 무 처		직 위		근무처 전화번호	

첨 부: 입증인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삭제) 1부.

※ 입증인 : 객관적으로 수험자의 경력을 입증할 수 있는 자(동일 사업장 또는 직종에서 근무하는 자 등)

※ 위 사실확인서의 진위확인과정에서 자료보완 등을 위해 추가서류(입증인의 인감증명서, 공증확인 등)를 요구할 수 있으며, 경력확인불가·허위작성 등이 발견되면 반려되거나 관련법에 의거하여 고발조치 될 수 있음

□ (입증인)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수 집 항 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기간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휴대전화), 근무처, 직위, 근무처 전화번호, 수험자와의 관계	수험자 응시자격 또는 일부면제의 증명 진위여부 확인	수집일로부터 5년간

※ 입증인은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하여 동의를 거부할 경우 수험자의 경력사항이 입증되지 않아 응시자격서류 심사가 거부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십니까? 동의 [ ] 미동의 [ ]

□ 국가전문자격 응시 자격 또는 일부 면제를 위한 경력 사실

수 험 자 성 명			생 년 월 일	
근 무 직 장 명	직 위	재 직 기 간		담당업무내용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 일 ~ 년 월 일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귀하

【별지 5】 성적확인동의서 (일본취득 TOEIC성적 제출 시 작성)

Authorization

I hereby authorize the TOEIC representative in _____ to confirm for the Korea TOEIC Committee / YBM/Si-sa my TOEIC scores per the information below. On my request, the ICF may relay the scores to a third party.

First name: _____
Family name: _____
Date of birth: _____
Test site: _____
Test date: _____
Test application (admission) number: _____
Address on test application form:
_____
Telephone number on test application form: _____

- **TOEIC Score**

Listening: _____
Reading: _____
Total: _____

Please confirm the above scores and report confirmation to:
Korea TOEIC Committee / YBM/Si-sa
Jongno 98, Jongno-gu, Seoul, Korea 03191
E-mail: check@toeic.co.kr
Telephone number: 82+2 2280-7294 / Fax number: 82+2 2280-7369

Signature of candidate, as it appears on passport: _____
Date of Authorization: _____

Unless renewed, this Authorization will expire 90 days after the date above written, at which point this document will be destroyed.

【별지 6】 감정평가사 어학시험성적표 제출 신청서

영어시험성적표 제출 신청서(감정평가사)

1. 수험자 서약사항

본인은 **영어시험성적표**를 붙임과 같이 제출하며, 제출한 서류가 **허위작성 또는 위조** 등으로 **사실과 다른 경우 당해 시험**을 **무효**로 하고 **부정행위자로 처리**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 수험자 인적사항

성 명		연 락 처	
생 년 월 일		휴대전화번호	

3. 영어시험성적 취득내역

*** 국내시행** TOEIC, G_TELP, TEPS 성적은 온라인다이렉트(큐넷)로만 제출 가능하므로 '큐넷 감정평가사 홈페이지'를 통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험종류	☐ TOEIC ☐ TOEFL ☐ TEPS ☐ G-TELP ☐ FLEX ☐ TOSEL ☐ IELTS	시행국가	☐ 국내 ☐ 해외(국가명:)
수험번호 (성적표번호)		취득점수	
시험일자	20 . . .		

4. 제출서류 내역

제출서류	☐ 영어시험성적표 ☐ 성적확인동의서(일본에서 취득한 토익성적에 한함) ☐ 기타( )

감정평가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감정평가사 제1차 시험 과목 중 영어과목 성적을 대체하기 위하여 붙임과 같이 영어시험성적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 (서명)

붙임 : 영어시험 성적표(원본) 등 부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귀하